

서울 어린이 미래 활짝 센터 신규위탁 동의안

| | |
|----------|------|
| 의안 번호 | 2281 |
|----------|------|

제출년월일 : 2024년 10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서울 어린이 미래 활짝 센터」는 어린이의 심리·정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서비스 지원, 치료연계 등을 통해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임
- 나. 「서울 어린이 미래 활짝 센터」는 전문성, 경험, 인적·물적 자원 등이 축적된 민간 기관에 위탁하여 어린이의 마음건강·적성진단을 통한 맞춤형 솔루션 지원 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기관명 : 서울 어린이 미래 활짝 센터
- 위치 : 강서구 화곡동 1027-29 일원 (강서구 화곡1주택재건축사업)
- 규모 : 지하 1층~지상 4층(연면적 3,786.49㎡)
- 사용면적 : 지상 3~4층(1,130㎡), 기부채납시설 활용

나. 위탁내용

- 위탁사무 : 「서울 어린이 미래 활짝 센터」 관리·운영

- 아동 심리·적성 진단 및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아동에 대한 의료지원 등 복지서비스 연계
 - 아동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정보제공
 - 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공간 운영
 - 관련 기관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 그 밖에 아동의 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위탁기간 : 3년(2025.3.1.~2028.2.28.)
 - 수탁자 선정방식 : 신규 민간위탁(공개모집)
 - '25년 소요예산(안) : 1,794백만원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 추진 필요성
 - 「서울 어린이 미래 활짝 센터」는 민간의 전문 지식과 특화된 기술이 필요한 사업으로, 특히 초등학생 대상 마음진단·적성 검사 및 대상군별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 아동 심리지원 관련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법인·단체를 공모를 통해 선

정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서비스의 질적·양적 향상에도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6. 아동상담소 :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나. 예산조치 : 2025년 본예산 편성 요구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24년 제7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조건부 적정('24. 9. 26)
- '24년 제7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후속조치 심의 : 적정('24. 10. 8.)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여성가족실 아동담당관 이영신(☎ 2133-5168)